

건축위원회 규정

2014. 11. 21. 제정

2021. 8. 2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장기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변경
2. 교지 매입의 필요성, 소요 예산, 재원 조달 방법 및 상환 계획의 수립과 변경
3. 건물 신축·증축의 필요성, 소요 예산, 재원 조달 방법 및 상환 계획의 수립과 변경
4. 신축 건물의 활용 계획, 부지 선정, 건축 내용(건평, 층수, 형태) 및 기초설계안
5. 그 밖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건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관리처장, 대외협력처장,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6.20., 2020.4.20., 2021.8.20.>

-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「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」제7조 및 제27조, 「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」제2조 및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칙 (2014. 11. 21. 제정)
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4. 2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8. 2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